◆ 총회에 조합원이 직접 참석 못하고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, 조합원이 총회 대리 참석 위임장을 작성하시고, 대리인은 총회 대리 참석 위임장과 붙임 서류 및 지참물을 완비하시어 총회장 접수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총회 대리 참석 위임장

■ 조합원(위임하는 자) 인적사항

권리내역 (종전동호수)	서울시 강남구 삼성로14 개포주공4단지아파트		아파트 동 호 상 가 동 호	
조 합 원 인적사항	성 명	(인감날인)	생년월일	
	현주소			

상기 본인은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정관 제22조 제2항에 의거, 2023년 1월 5일(목) 개최되는 총회에 본인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음에 아래 대리인에게 총회 참석 및 의결권을 위임합니다.

※ 대리인의 자격은 조합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거, 1. 조합원(위임하는 자)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중 성년자 2.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3. 법인인 토지 등 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함.

- 아 래 -

■ 대리인(위임받는 자) 인적사항

대 리 인	성 명	㊞	생년월일	
	주 소			
	관 계		전 화	

※ 붙임 서류

1. 조합원(위임하는 자)의 인감증명서 1부.
2. 조합원(위임하는 자)과 대리인(위임받는 자)의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등

※ 지참물

1. 대리인(위임받는 자)의 신분증과 도장

※ 대리인(위임받는 자)은 붙임 서류 및 지참물을 완비하지 않을 시 참석할 수 없습니다.

202 년 월 일

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귀중